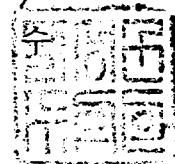


##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4
--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0. 10. 12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# □ 제안사유

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받은 대불금의 상환에 대하여  
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제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 
사무로 확정한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.

### □ 근거법령
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(규제법정주의)  
제5조(규제의 원칙)

### □ 주요골자

-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횟수, 독촉 등 상위법령 등에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련조항 삭제(안 제7조)

### □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.

### 부 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문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대불금의 상환 등) ① 기금 출납</p> <p>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활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0만원 미만은 3회</li> <li>2.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</li> <li>3. 30만원 이상은 12회</li> <li>4.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.</li> </ol> <p>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,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【별지 2호 서식】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“지방세체납처분”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 &lt;삭 제&gt;</p>